C - 35 - 2011

- (9) 가로보 및 추진코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여 공중에서 비계보에 조립할 때에는 작업대 등을 설치하여 추락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.
- (10) 외부 거푸집 조립시에는 측면 거푸집의 작업발판 단부에 미리 지상에서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한 후 인양하여 조립하여야 한다.
- (11) 외부 거푸집을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하부의 근로자를 대피시킨 상태에서 하부의 지주 연결핀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(12) 후방 가로보를 설치하기 전에 설치장소의 콘크리트 강도 및 교량 상부 구조물의 강연선 인장작업 완료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13) 교량 상부 슬래브 하부에 있는 비계보를 고강도의 강봉 등 현수재로 후방 가로보에 매다는 작업시에는 교량 상부 슬래브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한다.

5.3 이동작업

- (1) 작업시작 전에 이동작업의 작업방법, 작업순서 및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.
- (2) 최소 1주일 이상의 장기 일기예보를 파악하여 강풍·강우 등의 악천후가 없는 기간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3) 이동식 비계를 교량 상부구조물 가설높이에서 이동높이까지 내릴 때(약 100mm정도)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이동식 비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(4) 이동식 비계를 다음 작업 경간으로 이동할 때에는 이동작업 방법과 순서에 따라 천천히 이동시켜야 한다.
- (5) 유압시스템 작동시 시스템 조작자와 각 브라켓의 유도원 사이에 신호체제를 유지하여 이동식 비계의 본체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